

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단기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

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5년 8월 29일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1 채용 개요

○ 선발예정인원(2개 분야, 7명)

지원코드	채용분야	근무부서	배치인원(명)	근무예정지
인턴01 (4명)	일반행정	운영지원과	1	국민권익위원회 본부 (세종특별자치시)
		보호보상정책과	1	
		행정심판총괄과	1	
		국민신문고과	1	
인턴02 (3명)	일반행정 (부패방지)	청렴정책총괄과	1	
		부패영향분석과	1	
		청탁금지제도과	1	
합 계			7	

※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(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)

※ 지원코드 인턴01, 02는 합격자의 희망부서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 예정

○ 주요업무

채용분야	근무부서	담당업무
일반행정 (4명)	운영지원과	○ 인사 업무 지원 -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지원 - 인사위원회 등 회의 운영 및 회의 자료 작성 지원 - 직원 대상 교육운영 지원 ○ 서무 업무 지원 - 위원회 행사 지원 - 경조사 지원(생일·출산자) 등 직원복지 업무 지원 ○ 경리 업무 지원 - 지출서류 검토 등 ○ 기타 운영지원과 행정업무 지원
	보호보상정책과	○ 공익신고 업무 안내서 발간 지원 ○ 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홍보 지원 ○ 공익신고자의 날 등 행사·회의 업무 지원 등
	행정심판총괄과	○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 운영 및 접수업무 등 지원 ○ 기타 관련 업무 지원
	국민신문고과	○ 국민생각함 대국민 의견수렴 ○ 국민생각함 홍보물 제작 및 효과적인 홍보 수단 발굴 ○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지원
일반행정 (부패방지) (3명)	청렴정책총괄과	○ 반부패 주간 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○ 기타 서무 업무 지원
	부패영향분석과	○ 부패영향평가 사례집, 지침 초안 작성 및 교정 지원 ○ 부패영향평가 통계관리 지원
	청탁금지제도과	○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자료 제작 지원 ○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 행사 지원

※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

○ 근무조건

- (신 분)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
- (계약기간) 채용일('25. 10월 중 예정)로부터 약 3개월(~'25.12.31.)
- (보 수) 시급 10,030원, 월 2,096,270원(세전,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)
- (근무시간) 주 5일, 주 40시간(1일 8시간 근무)
- (후생복지) 4대보험(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 가입

2 응시 자격

□ 응시 자격요건(공통) ※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'25. 9. 23.) 기준

- 최종시험 예정일('25. 9. 23.) 기준 「청년기본법」 상 청년(19세이상 34세 이하)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
 - 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'제대군인' 및 「병역법」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'사회복무요원'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
 - ▶ 군복무기간 1년 미만 : 1세 / 1년이상 ~ 2년 미만 : 2세 / 2년이상 : 3세 연장
- '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(타부처 포함)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2회 미만인 사람(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제출)
- 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

< 관련근거 >

■ 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5조(채용결격사유 등 확인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 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
○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
<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(이해충돌방지법§11①) >

1. 소속 고위공직자
2.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2.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3.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□ **가점** ※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('25. 9. 8.)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

항목	관련 법령	부가 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~10% (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인턴01만 법정 가점 적용)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	서류전형 만점의 3%

※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

3 채용절차 및 일정

○ 채용절차 : 1차 서류전형, 2차 면접시험

○ 채용일정(안)

채용공고 및 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'25. 8. 29.(금) ~ '25. 9. 8.(월)	'25. 9. 17.(수)	'25. 9. 22.(월) ~ '25. 9. 23.(화)	'25. 9. 26.(금)

※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일 : '25. 10. 13.(월) 예정

※ 채용 일정, 근무시작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1차 : 서류전형

-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, 서류전형 기준*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

* 서류전형 기준 : 1. 인턴지원서, 2. 가점

※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3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

○ 2차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'정책제안서'를 제출받아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※ 정책제안서 주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,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뉴스 등을 참고

※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면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

- 개별 질의·응답을 통해 평정요소를 매우우수, 우수, 보통, 미흡, 매우미흡으로 평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총점이 동일한 경우 '매우우수'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결정
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중 2개 이상을 '매우미흡'으로 평정하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'매우미흡'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

< 평정요소 >

- ① 참여의지 및 진로 연계성 : 인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, 진로계획과의 연계 정도
- ② 직무 이해도 및 전문성 :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, 전문성 확보 여부
- ③ 정책제안의 논리성 및 창의성 : 정책제안서의 문제 인식, 아이디어의 참신성, 실현 가능성
- ④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: 질문에 대한 응답의 명확성, 면접 태도
- ⑤ 문제해결 및 협업 역량 : 조직 내 협업 가능성, 상황 대응력
- ⑥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: 공무수행에 대한 태도, 책임감, 공정성 등 자세
- ⑦ 종합 판단 : 종합적 적합성 판단

※ 평가방식 : 개별면접으로 인턴지원서, 정책제안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

※ 동점자 처리 : 취업지원대상자 >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> 서류전형 성적 순

-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 불합격 사유가 없는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-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	'25. 8. 29.(금) ~ '25. 9. 8.(월)	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, 나라일터 등 공고
원서접수	'25. 8. 29.(금) ~ '25. 9. 8.(월) 18:00	전자우편(E-mail) 접수
서류전형	'25. 9. 15.(월) 예정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	'25. 9. 17.(수)	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, 나라일터 등 공고 (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보)
서류전형 합격자 정책 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	'25. 9. 17.(수) ~ 9. 21.(일) 14:00	
면접시험	'25. 9. 22.(월) ~ 9. 23.(화) 예정	분야별 세부 면접일정 별도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일	'25. 9. 26.(금)	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, 나라일터 등 공고 (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보)
채용 예정일	'25. 10. 13.(월)	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

4 원서 접수

- 원서 교부 :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(인터넷지원서 등 포함)
※ 별도 양식으로 제출 금지
- 접수 기간 : '25. 8. 29.(금) ~ '25. 9. 8.(월) 18:00
- 접수 방법 : 담당자 전자우편(tlwns1119@korea.kr)으로 온라인 제출
※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, **분할·중복 접수 불가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**
※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'성명(지원분야)'로 기재[예 : 청년인턴 지원서류 제출-홍길동(인턴01)]

5 제출 서류

가. 아래 제출 서류 중 공통서류인 ①~③번의 경우, 서명란에 반드시 **자필로 서명**해야 한다. **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**을 반드시 확인
 다. 서명한 공통서류 전체를 순서에 따라 전체 서류를 스캔하여 **하나의 PDF 파일**로 제출

구 분	제출 서류
공통 (필수)	① 청년인턴 지원서 1부 : [붙임1] 서식
	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: [붙임3] 서식
	③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: [붙임4] 서식
	④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: [붙임5] 발급방법 참조 ※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확인용(2회 이상 여부)
	⑤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, 병역사항 포함)
서류전형 합격자 (해당자)	⑥ 정책제안서 : [붙임2] 서식 ⑦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⑧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⑨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지원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

	⑩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경우 증빙서류 ⑪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집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등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필요서류 상세 별도 공고
--	---

6 유의사항

-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공통(필수)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인턴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장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인턴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(최종 합격자의 경우,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,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) 하며,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붙임6)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☎044-200-718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붙임1> 청년인턴 지원서

청년인턴 지원서

응시번호		지원코드		채용분야	
성명		생년월일		연락처	휴대전화 이메일
가점 사항	☐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☐ 장애인, ☐ 저소득층, ☐ 한부모가족, ☐ 북한이탈주민				

◎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

-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
-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,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

◎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

-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
- 출신학교, 자격증, 시험(어학 등) 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

◎ 문제 해결 경험

- 일상생활, 학교, 아르바이트,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
-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

◎ 소통 및 협업 능력

-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

◎ 기대하는 점 및 각오

- 인턴ships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

○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
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-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
- 학력, 경력, 자격증,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
-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
- 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

1.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시 **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 및 누락은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**이 될 수 있습니다.
2. 『청년인턴 지원서』는 아래의 《작성요령》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《 작 성 요 령 》

- ① **응시번호** :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
- ② **지원코드 및 채용분야** :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에 ☒ 표시 및 채용분야 기재
(예) 지원코드 : 인턴01 지원 → ☒ 01 / 채용분야 : 일반행정
- ③ **성명, 생년월일, 성별** :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
(예) 생년월일 : 2001.10.15. 성별 : 여
- ④ **전자우편·(휴대)전화** :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
- ⑤ **가산요건**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층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는 해당란에 ☒ 표시

<붙임2> 정책제안서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)

정책제안서

지원분야		성 명		연락처		e-mail	
------	--	-----	--	-----	--	--------	--

제 목	청년이 보는 00 정책 ※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·사업·제도(예: 복지, 노동, 산업, 금융 등)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
제안 배경 및 문제점(현황)	
개선안 또는 정책대안	
예상 효과	

○ 정책제안서 작성요령
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-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
- *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,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
- 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.

- (1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근로자 채용 및 관리
- (2) 개인정보 수집 항목(필수) : 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주소,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·자격·면허사항, 4대 보험 자격 득실, 소득금액증명, 외국어성적·논문·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
- (3)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**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**

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

☞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입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2.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
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·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.

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.

(1) 제공받는 자	(2) 제공목적	(3) 제공 항목	(4)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
<u>개인정보 확인기관</u>	<u>근로자 채용 관리 (자격확인)</u>	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	<u>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(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)</u>

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이 서명·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, 이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성명 : 2025년 월 일 (서명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

<붙임4>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⑫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. . .

성명 :

(서명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

<붙임5>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

①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' 접속 (<https://total.comwel.or.kr>)

 근로복지공단

Korea Workers' Compensation & Welfare Service



일하는 삶에安心과 안정을 드리는,
근로복지공단

대표 홈페이지

근로복지공단 관련 소식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홈페이지입니다.

바로가기

고용·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

고용·산재보험 관련현 각종 민원을 신청(신고)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
바로가기

근로복지넷

각종 근로자 복지사업 (생활안정자금, 임금채권사임 등)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
바로가기

퇴직연금

중소기업퇴직연금 /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
바로가기

공단 병원

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사이트입니다.

바로가기

우편번호 [44428] 울산광역시 중구 중기로 340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-0075(통화로 발신자 부담) • Copyright © 2023 by 근로복지공단 All Rights Reserved.

② 개인 → 일반근로자 선택 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

☐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**①**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합니다.

사업장

사무대행

의료기관

개인

☒ 일반근로자

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사)·예술인 ☐ 산재근로자 ☐ 대리인(간이대지급금/심사청구/구상금협의조정/최초요양급여신청)·유족

주민등록번호

123456

☒ 개인정보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

공동인증서 로그인

간편인증 로그인



-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**공동인증서(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)** 또는 **간편인증(주민등록번호)**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 간편인증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 - 간편인증 사업자: 카카오페이, 통신사PASS, 한국정보인증(삼성PASS), KB국민은행, NHN 페이코, 신한은행, 네이버, 토스, 뱅크샐러드, 하나은행, 농협, 드림인증
 - 간편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간편인증 화면의 안내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인증서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여러개의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기 바랍니다.(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 60분 동안 화면 이동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)
- 고용·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**를 발급하시려면 **개인 > 일반근로자** 또는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사)·예술인** 선택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토탈서비스는 모바일 환경(모바일 웹, 앱)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
③ ‘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’ 선택

근로복지공단
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

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**개인**

[일반근로자] 박정연 님

민원접수/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/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

자주 찾는 서비스

토털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

개인

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

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개인별 부과고지보 험료 조회

One-Click 산재상담 및 신청

심사청구서 작성

공지사항

+ 알림창

연간 정기작업으로 인한 토털서비스 일시중지 계획 알림(2025.01.04) 2024-12-31

산재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 (재)인증 결과 알림 2024-12-26

(겨울철 비상진료 한시적용-대상기관)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 안내 2024-12-20

(겨울철 비상진료-한시적용)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재보험 적... 2024-12-20

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2025-01-02

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2025-01-02

2025년 최저임금

시간급 **10,030** 원

월 환산액 **2,096,270** 원

(주 40시간 기준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
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**1350**

최저임금위원회

④ 보험구분 중 ‘고용’ 선택 → 조회구분 중 ‘상용’ 선택 → 조회

⑤ 직종포함여부 ‘예’ 선택 → ‘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전체 이력 인쇄)’ 신청 선택

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Home > 증명원 신청/발급 >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

+ 마이메뉴 추가

*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.

본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· 보험구분 ☐ 산재 ☒ 고용

· 조회구분 ☒ 상용 ☐ 일용

조회

● 이력내역서 발급

직종포함여부 ☒ 예 ☐ 아니오

①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[자격관리 상세이력]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.

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개별사업장)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

신청 메일전송

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

신청 메일전송

고용/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

신청 메일전송

참고

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

☐ 산재보험 ☒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(근로자용/피보험자용)					
발급번호	0000-2025-01	55	발급일자	2025년 01월 03일	접수번호 0000-2025-7 J
신청인	성명	박		생년월일	년 10월 30일
조회기간	전체 (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)				
일련번호	직종명(코드)	사업장 명칭	취득일/전근일	상실일	비고
1	정부·공공 행정 사무원(025)	국무조정실	2024-09-02		근로자
2					근로자
※ 본 자료는 산재보험·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/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,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,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-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 (무인민원발급장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) -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「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-국민소통-민원/조회-증명원 진위확인」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					
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. 2025년 01월 03일 					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

<붙임6>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